

제417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8월28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6)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2)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4)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0)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76)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7)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5)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3)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1)

상정된 안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2) 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2) 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6) 2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2) 2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4) 2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0) 2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76) 2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7) 2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5) 2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3) 2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1) 2

(10시06분 개의)

○소위원장 임오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의가 첫 회의인 만큼 출석하신 위원님들, 인사 한 말씀씩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지난번에 전체회의 때 했는데 뭘 또……

○소위원장 임오경 꼭 하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진종오 위원 괜찮습니다.

○김재원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예, 패싱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2)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2)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6)
4.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2)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4)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0)
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76)
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7)
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5)
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3)
11.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1)

(10시07분)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전문위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어제 배포해 드린 소위 자료 구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소위 자료는 법안의 꼭지별로 병합된 것은 병합해서 묶어 두었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개조식으로 요약을 하였고 검토보고·대체토론의 요지, 참고자료 순이고 마지막에 조문자료, 조문대비표에 협행·개정안·수정의견을 담았습니다.

수정의견 부분이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는 전문위원실에서 문체부 등이라든가 관계자들 확인해서 제시한 안인데 별도로 정부가 의견이 있는 경우는 점선 박스로 해 가지고 거기에 별도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정의견 부분이 맨 뒤에 있고 해서 설명하는 과정에 잠시 페이지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체육진흥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건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잠깐만요, 전문위원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 두 분이 이제 오셨습니다. 저희가 22대 첫 법안소위인데 위원님들의 말씀은 듣지 않는 걸로 의견을 주셔서……

○**민형배 위원**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임오경** 예,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전완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정부 제출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 재원 중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제외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대체·검토의견은 2019년 12월 27일 현재에서 수많은 체육시설 중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에게만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위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일반 국민과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여 2000년 이후부터 부가금 징수는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위헌판결에 따른 후속 법률 정비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입니다. 참고로 동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제출된 바 있었습니다.

5페이지에 조문자료가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조문자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조 1항 3호 골프장 시설 입장의 부가금, 그다음에 그 밑에 부가금 징수 절차 23조, 그다음 뒤편의 55조 2항 제1호를 삭제하는 안입니다.

부가금과 관련한 개정 연혁은 2페이지, 현재 결정문은 3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금을 징수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근거 규정이 골프장 부가금 납부 의무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관련 규정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의 질의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형배 위원** 혹시 국장님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체육국장 이정우입니다.

○**민형배 위원** 부가금이 몇 %였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민형배 위원** 부가금이 몇 %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그게 1000~3000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의.

○**민형배 위원** 그냥 정액제였다고요? 골프장마다 다르고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1000~3000원 범위 내인데 정수 수수료 4.95%를 포함해서입니다.

○민형배 위원 4.95%?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전문위원 전완희 2페이지 참고자료에 게재해 놨는데요. 1000~3000원 범위 내에서 정수한 적이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예.

저는 이게 왜 위헌결정이 났는지 모르겠던데……

○김재원 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부처에서 볼 때 이 위헌결정이 온당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스포츠토토가 활성화되다 보면서 회원제 골프장에서 받는 수익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몇 백억 규모였고……

○민형배 위원 몇 백억이 무슨 많지 않아요, 많지 그 정도면.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그러니까 저희가 스포츠토토로 조성하는 재원이 1년에 보통 2조 5000억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실제 골프장 같은 경우도 골프 인구가 저희가 한 500만 명 정도로 추산할 만큼 대중화됐다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아마 그 당시에 위헌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대중제가 아니고 회원제 골프장한테만 제한적으로 적용을 했던 건데 이것이 왜 차별이지?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차별인가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차별이라고 제가 단정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현법재판소의 결정을 그냥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좀 말씀해 보시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지금 회원제 골프장이 한 200개 정도 되고 대중형 골프장이 더 많기는 많은데요.

○민형배 위원 이렇게 하면 세금을 누진제로 적용하는 거나 다른 시설 이용해서 요금을 별도로 적용하는 거나, 가령 하다못해 인터넷 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을 두는 거나 이런 게 다 위헌이어야 되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그런데 골프장이……

○민형배 위원 골프장이 엄연히 대중제하고 회원제로 구분이 되어 있고 회원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인데 이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이게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돼요.

○김승수 위원 이것은 우리가 왈가왈부해 봐야 실익이 있나……

○민형배 위원 아니, 점검을 좀 해 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다음에 골프장 요금에 관한 검토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소위원장 임오경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골프장이 체육시설업으로 들어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골프장, 체육시설업으로 들어가 있는 게 2000년에 이 부가금이 폐지된 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소위원장 임오경 그런데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만 지금 존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자라는 건가요, 형평성에 맞춰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소득층이 주로 즐긴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골프장이 존속됐지만 이제 시대가 변해서 대중화로 변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이것 좀 설명드리면……

체육정책과장 김홍필입니다.

이 법률은 지금 현재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 받고 있고요. 이것은 단지 이미 효력이 없는 법률을 삭제하려는 것이지 지금 뭐 이렇게 결정에 따른……

○민형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논리적으로 위헌결정이 났고 받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미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폐지하는 것 오케이. 그것은 그렇게 할 건데 앞으로, 골프장 요금에 관한 논란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원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부과하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하면 나중에 골프장 요금이나, 지금 제가 좀 검토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데서도 위헌 시비가 일까 봐서 사전에 점검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겁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다른 의견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자료 8페이지입니다.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데, 두 꼭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꼭지를 설명드리면 체육계의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신고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 조항 규정을 하는 것인데 먼저 위쪽 꼭지를 보면—원쪽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설명은 편의상 바로 이 꼭지에 대한 오른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신고 의무자의 신고 이후의 후속 조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든가 공직자윤리법 등 유사한 입법례에서도 이를 거의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동일한 입법례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검토가 필요한 두 번째 꼭지는 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인데 신고자 등이란 신고자에 더하여 피해자, 진술·증언인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나 신고·상담·임시보호시설 종사자, 그러니까 신고자가 동의를 하면 그 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든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오른쪽입니다,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이후 후속 조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밑에 두 번째 꼭지입니다, 다만 스포츠윤리센터 및 신고·상담·임시보호 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자료 등 신고·상담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제공 대상이 될 수 있고 신고자 등의 동의가 있더라도 스포츠윤리센터가 다루는 사안의 위중함, 제공 동의한 정보 범위의 모호성,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법, 공직자윤리법 등에서는 신고자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체부에서도 개정안처럼 신고자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은 삭제하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입법례를 볼 때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범위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공은 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서 신고자 등 동의에 따른 정보 제공은 삭제를 하되 목적 범위 내에 자료 제공하는 걸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의 조문대비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오른쪽 수정의견 위의 18조의4 3항은 아까 먼저 말씀드린 신고자가 동의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요. 그건 개정안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신고자 등이 동의한다는, 그 밑의 가운데 개정안 단서 ‘다만, 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지 않는다’ 이것은 삭제하고 다시 오른쪽 수정안에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이것 누설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법문이 이렇게 표현돼 있지만 실질적 의미는 목적 범위 내에서는 자료 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로 비밀엄수라든가 참고자료에 관한 입법례는 10페이지, 참고 조문은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장미란** 체육단체의 징계 요구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요구권을 신설하여 징계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아울러 징계 요구의 실효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문체부장관이 징계 결과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추가로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건 조사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 신고자 인적사항 및 사건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사건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에 대해서는 타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제가 두 꼭지 중에 한 꼭지만 설명했는데 차관님께서는 두 꼭지 다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나머지 두 꼭지, 17페이지에 있는 나머지 꼭지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의원님께서 한 두 번째 꼭지는 문체부장관의 체육단체에 대한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 책임자 징계 요구에 대해서 결과 보고가 미흡하면 문체부장관이 체육단체에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월요일 전체회의에서 김재원 위원님께서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체부장관을 통해 징계 요구한 336건 가운데 5년 동안 미통보가 146건에 달해서 미흡하다는 문제 지적도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문체부장관의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조치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징계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징계 절차의 객관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징계 관련 절차는 그 밑의 당구장 표시를 참고해 보시면 윤리센터가 문체부를 매개로 해서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는 프로세스입니다.

이에 대한 수정의견은 체육단체의 징계 결과 보고 시에 처음부터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체부에서는 처음부터 근거자료를 받는 것에 더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보완하고 그다음에 재심의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4페이지 조문대비표를 한번 보시면 먼저 18조의9 2항은 결과 보고할 때 근거자료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회에서 제시한 오른쪽 수정의견은 3항 대신에, 사후적으로 자료제출을 추가로 요구하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회의록 등 근거자료를 포함하여 받도록 하는 수정안을 낸 것이고 문체부에서는 이에 더하여 오른쪽의 자료, 장관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와 재심의 요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한 참고 조문은 18페이지,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말씀이 있었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김재원 위원 제가 징계 결과가 보고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은 맞는데 앞서서 검토보고 요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의 위중함에 따라서 제공 동의한 정보의 범위의 모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까지를 다 공개하자는 것인지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가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일어날 2차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거든요.

이 법안의 내용 자체는 징계 처분 결과를 문체부장관에게 통보를 하고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를 감독하기 위한 것임이 맞는데 그런데 여기에 개인정보가 포함이 되면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답변.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체육정책과장 김홍필입니다.

우선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은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 그 신고자 인적사항을 알려 줄 수 있다는 부분은 이게 뭐가 있느냐면 제삼자가 신고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삼자가 신고를 했고, 가해자·피해자에 대해서 체육단체에 신고를 해서 징계 처리 중인데 제삼자가 목격자인 경우 알려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체육단체 징계할 때 이 사람이 진술을 하든지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을 알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위에 대한 게 있고요.

두 번째, 18조의10은 그겁니다, 조사한 자료의 제공 범위는 어디까지 할 거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그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신고자 동의만 있다면 누구에게든 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입장은 이 조사한 자료는 개인정보도 들어 있고 민감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삼자에게 제공하더라도 이거는 이 법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해서, 예를 들어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처리할 체육단체 그 기관에만 보내 준다든지 대상을 한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배현진 위원님.**

○**배현진 위원 김재원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내용의 연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스포츠윤리센터가 제대로 민원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법안들이 덧붙여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법안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 윤리센터에서 종사했던 사람 등이 직무상에 알게 된 비밀이나 그런 내용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지금 김재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지적하신 거고 저는 이걸 누구한테…… 대상에 대한 것도 지금 이게 되어 있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이 있고 그 대상이 있는 거고,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어떤 사건을 조사해서 문체부 통해서 체육단체에 징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사한 자료를 법률적으로 보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징계 요구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이 징계요구권에 대해서 다 처음부터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은 제공할 수 있다 하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한 자료를 대한축구협회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조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그 조사자료를 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배현진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특정한 예를 드시는 거고 사실 이 법을 저희가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된다면 많은 예외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도 그렇고 제공받는 그 정보를 수신하는 대상자들도 그렇고 이 법에 맞춰서 저희가 대단히 많은 가지 수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사실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은 이 법만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타법에도 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타법 케이스에 맞춰서 시행될 때…… 그러면 이게 원안을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 가면서 하겠습니다. 이 법률 규정은 타법의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케이스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박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과 배현진 위원님의 모든 우려에 같은 공감을 표하고. 제가 근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김선교 의원님의 이 개정안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수정 수용을 하면서 마치 너무나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처럼 많은 내용들이 지금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개정안에 비해서 정부가 이렇게 과다하게 조정안을, 수정안을 내서 여기서 토론하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물론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의 인권침해, 스포츠 비리 접수·처리 등 이런 타법의 사례 등 모든 것에 제가 동의합니다만 우선 첫 번째, 정부의 수정 수용이 너무 광

법위하게 개정안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중에서도, 수정 수용의 내용 중에서도 보면 좀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직감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봅시다.

근거자료를 포함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그래서 근거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다시 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수용하자는 이중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더 이상하게. 굉장히 강하게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체부장관에게 보완 요구 및 정계 재심의 요구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복 요구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리 그 필요성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1, 김선교 의원이 낸 개정안에 비해서 정부의 수정 수용안이 너무 지나치게 복잡하다.
2,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중복성이 있다 이런 측면이에요. 그러니 그런 점을 지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체육국장 이정우입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지금 건립되고 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정계 처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스포츠윤리센터는 징계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다른 비슷한 이런 유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중징계·경징계 이렇게 구분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데 스포츠윤리센터는 현재 징계만 요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징계에 해당될 사항인데도 그것이 실제 협회에 갔을 경우에는 아주 경징계나 견책이나 경고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김선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에 예를 들어 연맹에서 어떻게 처분을 했을 때 그냥 혐의 없음이라고 나왔을 때 왜 혐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근거를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 근거자료가 들어갔고, 두 번째로는 그 근거자료 이외에도 그 건에 관해서 근거자료가 되게 미흡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좀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하면 자료를 보완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집행력을 강제하기 위해서 재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추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사실 저희가 기능을 한번 좀 과도하게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포츠윤리센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동안 처리 같은 경우도 잘 통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단체에서 문체부에 대해서 그 징계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90일 이내로 한정이 되고 최대 30일까지 연장된 것도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에 김선교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해 주신 김에 좀 더 스포츠윤리센터의 어떤 법적 실효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그것을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박수현 위원 국장님 지금 설명이 굉장히 긴 것만 봐도 그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 절차적 문제를 보면 김선교 의원께서 개정안을 냈는데 정부가 굉장히 이렇게 설명이 긴 내용들을 정부의 수정 조정안으로 담아서 여기서 처리를 한다는 것은 저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선교 의원님 안과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런 안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안을 저는 별도의 개정안에 좀 담아서 그렇게 병합 처리를 다음에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정부가 이렇게 과도한 수정안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통과를 시키자라고 하는 것은 절차상 저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위원장 임오경**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승수 위원** 김선교 의원안은 크게 두 가지 안인데 일단은 신고자 비밀보장 예외 규정이 있고 또 각 그 협회의 징계 처리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서 체육국장 설명했듯이 기존에 4년 전에 고 최숙현 사건 이후에 스포츠윤리센터가 생기고 이렇게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기대했던 만큼 역할을 지금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또 그 부분에 아직도 여전히 각 종목별 체육협회 이런 데서 보면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이런 경향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비위행위자가 나오더라도 솜방망이 처벌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앞서 신고자 비밀보장에 관련되는 부분은 다른 유사 법안과 같이 지금 정부 수정의견대로 신고자 등까지 포함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신고자만 동의한 경우 이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신고자가 미성년자라든지 또 글의 능력이 좀 제한되는 그런 경우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체육회나 이런 데 보면 미성년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성년자와 또 후견인, 부모와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징계 결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관련해서는 준경하는 박수현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공정성, 독립성, 실효성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다음에 심의할 때 관계자, 예를 들면 스포츠윤리센터의 대표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 대한체육회 산하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의 그런 독립성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위원들이 좀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나서 법안을 심의했으면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제가 좀 한 말씀 물어볼게요.

스포츠윤리센터가 저희가 이렇게 시작된 게…… 대한체육회 산하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독립기관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렇잖아요, 독립기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법안을 보면서 우리 문체부가 스포츠윤리센터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희 국회에서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요청은 합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은 없지만 그래도 이러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이런 징계가 나왔습니다, 우리 개인 위원들이 요청을 할 때 그렇게 답변을 받아요. 그 이상이 필요

할까요? 그 이상이 필요하다라면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저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전문위원께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비밀보장 예외 규정 관련해서 우리 성폭력방지법에서 신고자 동의 시 공개하자는 논의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전완희** 지금 자료 10페이지 입법례에 보면 성폭력방지법에서는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 국민체육진흥법에 스포츠인권센터가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 권한은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독립기관인데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조항이 12페이지부터 한 3페이지에 걸쳐 10개 정도가 죽 있는데 거기 보면……

○**소위원장 임오경**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한 거는 성폭력방지법에서 신고자 동의 시 공개하자는 논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 전완희** 저희가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포츠윤리 조사 중에는 체육계 폭력 그리고 성폭력 관련 이슈도 많은 만큼 이 법안은 성폭력방지법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굳이 대안을 생각해 보자면 조사 내용 중 비리 관련 내용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준하고 성폭력 등은 성폭력방지법에 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 말씀을 저는 좀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문체부장관 근거자료 제출 요구권 신설에 관련돼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부처나 소관기관에 자료 요구를 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강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관련돼서 문체부장관의 근거자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도 문체위 위원에게도 이 근거자료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자체를 받아 볼 수가 없어요, 문체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체부장관에 한해서 저희가 이렇게 요구권 신설을 해 놓는다, 제출 요구권 신설을 마련한다면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한 체육단체, 공정위 등은 진술서, 피해자 증빙자료 등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종목별 공정위 자체에서도 공정한 징계를 한다는 게 한계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다시 좀 더 추가적으로……

○**배현진 위원**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말씀 죽 주셨는데요. 정부 측에, 김선교 의원실에서 처음에 법안을 내셨을 때 이후에 지금 정부안이 많이 담겼잖아요. 이것 좀 상의를 하셨습니까, 의원실 법안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이 부분은 의원실에 직접 설명드린 건 아니고요. 이거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거자료를 왜 받아야 되냐 하면 지금 체육단체에서 스포츠윤리센터 쪽에 그것만 나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 지금 일단 김선교 의원님이 내신 안에 대해서 정부안이 더 많이 담기는 거, 아까 박수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실이 다 알지 못하는……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저희가 국회에서 어쨌든 입법을 하는 기관은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안이 어떤 선한 취지라고 하더라도 더 많이 담겨서 그냥 저희가 이대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정보 제공의 범위 그다음에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저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이유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스포츠윤리센터라는 기관을 만들었지만 그런 경우는 설사 없겠지만 잘못된 신고나 악의적인 신고에 의해서 불상의 사람들이 부득이한 경우를 당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신고자가 동의했다고 해서 그냥 정보가 누설돼 버리면 예상치 못한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면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세심하게 저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했을 때 그 법의 처벌이 지금 제대로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특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해서 경징계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문체부장관이 징계를 그 위원회에 다시 요구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을 담으신 것 같은데 법에서도 처벌을 할 때는 같은 안으로 두 번 부치지 않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 예외가 생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챙겨 주셔서 김선교 의원실과 다시 이 부분을 논의하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더 전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려사항에 대한 전제를 담은 개정법을 더 추가로 부차적으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이 법을 좀 더 조정하셔서 논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가 정부와 협의해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문체부에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드는 자리인 건 맞지만 입법기관이 만든 법의 취지와 다르게 이 법안이 윤색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김선교 의원님 이 법안은 계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자료 27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개정안은 심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심판 육성 및 고용 그리고 심판의 종목단체 등록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스포츠의 3대 축인 선수, 지도자, 심판 중 하나인 심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선수와 지도자의 경우는 현행법상 별도의 정의 조항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심판의 경우 선수 등의 금지행위,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을 뿐 직접적인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 정관, 각 프로연맹의 정관 등 하위 규정에서 심판 육성, 심판 등록, 계약 등 관련 사항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항목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심판의 정의 규정 신설은 법체계상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번 심판 육성 및 고용은 개정안 자체가 체육단체의 고용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참고자료 2에 있습니다, 상임심판으로 선발되어 활동하는 자들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체육단체에 전속심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심판 등록의무과 관련해서는 현재에도 심판은 경기인으로서 회원종목단체에 등록해야만 활동할 수 있고 경기인등록시스템과 징계정보시스템 등에서도 심판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취지로 보입니다.

이런 검토의견을 전제로 한 수정의견은 심판의 정의 조항을 도입하되 세 번째 심판의 등록의무를 별도 규정하기보다는 심판의 정의 조항에 등록을 한 자를 심판의 정의로 하여 포함하는 내용 그리고 심판의 육성에서 표창 대상에도 포함하는 내용 그리고 전속심판 등 계약 형태가 다양하고 고용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므로 고용이라는 표현보다는 심판을 둘 수 있다는 통상적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문체부는 현재 심판의 고용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35페이지 조문대비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보면 심판의 정의는 개정안의 ‘심판이란 판정하는 자’에다 추가해서 ‘판정하는 자로서 경기단체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이 등록된 자는 그 위의 선수에 대한 등록 규정과 유사한 형식입니다.

그리고 밑의 14조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에 심판 육성을 포함하여 표창 대상에 심판을 포함하고 그리고 밑의 4항에서 개정안의 ‘심판을 고용할 수 있다’를 통상적인 표현인 ‘심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문체부는 심판을 고용하거나 심판을 두는 규정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조의 18(심판의 등록의무)은 정의 조항에 포함됐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임심판제도 등 참고자료는 30페이지, 참고조문은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장미란** 체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심판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심판의 정의 규정,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육성 대상으로 심판 추가 등 일부 조항 신설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체육회 및 경기단체 등의 고용 대상으로 심판을 명시하고 심판의 등록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대회별로 한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는 심판 직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의 의견 주십시오.

○**배현진 위원** 정부 측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문체부에서 심판을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각 대회 또는 경기에 따라 활동하는 개인사업자와 유사하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활동하는지 저희가 모르니까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각 대회때마다 위임계약을 통해서 심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종별 선수권 대회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심판들이 고용이 되고, 심판하시는 분들이 전임으로 심판하시는 분들보다는 지도자를 같이 겸임을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일반 선수나 지도자랑 똑같이 전속 고용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금 의견을 냈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잠깐만,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상임심판제도로 해서 용역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개인사업체를 통해서 종목 대회가 있을 때마다 파견해서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개인으로 모든 걸 다 겸직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에서 지금은 한 3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통해서 용역계약 형태로 치러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다루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지금 저희가 한 86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고용으로 한다라고 하면 예산 추이부터 시작해서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위원장님 말씀에 다시 좀 부언을 드리면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25개 종목에서 총 140명 정도를 상임심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임오경** 그게 지금 용역계약 형태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1년에 11개월 정도 계약이 돼서 3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그분들 역시도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지도자 같은 것도 겸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저희가 심판 규모로 등록돼 있는 분들은 8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임심판으로 하시는 분들은 약 140명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소수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심판들을 고용 형태로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 것인지 그리고 각각 종목의 특색이 있는데 그들을 어떤 형태로 고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련된 연구나 용역이 지금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고용을 할 수 있다니 아니면 심판을 둘 수 있다 해 가지고 명시적인 규정이 들어가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아직 성급하지 않나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본 개정안의 취지가 ‘스포츠경기의 3대 축, 선수·지도자·심판의 하나로 중요한 요소인 심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이게 검토보고 요지이거든요. 그리고 이 개정안의 취지도 아마 그런 것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것은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나 정부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뒤의 36쪽 법조문표에 제18조의18(심판의 등록의무)을 삭제하고요. 대신에 2조(정의) 부분에 ‘경기단체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굳이 각 경기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현재 기준에 등록의무가 법조문 18조에 있는데 심판의 지위와 육성 이런 것들을 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에서 굳이 법조문에 등록이 돼 있는 걸 삭제까지 하면서 이렇게 2조(정의) 부분에 옮기는 것이 무슨

취지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선수에 대한 정의에서도 ‘선수란 경기단체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 역시 별도의 경기 등록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단체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심판에 그렇게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아, 그것을 맞추는 취지라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박수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심판의 지위, 육성 이런 것들에 관한 개정안 취지의 토론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법에 등록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걸 삭제하는 것이 이 개정안을 검토하는 취지에 맞는가, 오히려 역행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다른 것과의 어떤 규정을 맞추는 그런 취지는 이해는 하겠는데 혹시라도 있는 법조문까지 삭제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굳이 삭제할 필요 있습니까?

○**전문위원 전완희** 위원님, 설명드리면 심판의 등록의무는 현행 규정은 아닙니다.

○**박수현 위원** 아니야?

○**전문위원 전완희**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그 부분을 넣는 대신에 그냥 정의 규정에다 포함하자라는 수정의견입니다.

○**박수현 위원** 아, 그러니까 현행은 아니고 개정안에 넣었는데 그러니까 개정안에 있는 것을 굳이 삭제를 하면서 그걸 단순히 맞추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냐. 그래서 제 의견은 그냥 개정안대로 삭제를 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하는 게 오히려 이 개정안의 취지를 보호하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제가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의 지적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승수 위원**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실효성 문제인데 앞서 등록 같은 경우 사실 등록을 안 하면 심판 활동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전문위원 전완희** 현재도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굳이 등록을 의무화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정안과 수정안 보면 개정안은 ‘심판을 고용할 수 있다’ 또 수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심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 심판을 두도록 요청할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사실 심판이라는 건 경기의 본질입니다. 심판이 없는 경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의 둘 수 있다는 의미는, 사실상 이 조항이 없더라도 이미 경기에는 심판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둘 수 있다는 얘기는 문체부장관이 요청하지 않으면 심판을 두지 않아도 된다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그렇게도 오해될 수 있어서 이것은 조금 그 측면이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저는 굉장히 무의미한 조항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사실은 선수, 체육지도자뿐만 아니고 심판 육성에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지요. 특히 국제

심판 같은 경우에 국가적으로 양성을 시키면 우리가 국제대회에서도 나름대로 또 불공정한 그런 판정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실질적으로 국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심판 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표창 정도는 줄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구체적인 역할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심판을?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지금 지자체에서도 심판 전문성 강화라든지 그를 위해서 교육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승수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법이라는 것이 실제 그 법이 시행됐을 때 실효성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지 전혀 사실은 현재와 다른 효과를 낼 수 없는 그런 조항이나 불필요한 조항 이런 것들은 넣을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법안 조항을 넣을 때는 뒤에 시행령이라든지 그 이후까지 생각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법안이 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지금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심판의 육성 및 고용 그다음에 종목단체 등록의무 등을 규정을 함으로써 심판을 제대로 정의하고 육성 및 고용을 하고 등록의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의무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술인 복지법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받아서 거기서 국가에서, 아까도 개인사업자라는 표현을 여기다 쓰셔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프리랜서로 계속 활동하던 예술인인데 이제는 예술인복지센터를 통해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아서 일부의 고용보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인 복지라는 차원에서 앞으로를 보셨을 때 이 등록의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꼭 굳이 개인사업자라고 표현을 하셔서, 대회마다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희도 행사마다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근거는 예술인 쪽하고는 어떠한 평등, 평등하게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다 이런 게 지금 있는 거거든요. 심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역시나 가수나 배우가 없으면 무대가 꾸며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사실 등록의무제 규정의 입법 필요성이 낮다라고 판단한 것은 심판은 선수와 지도자와는 다르게 심판을 하면서 지도자도 할 수 있고 또 오히려 폭넓은 다양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도 더 많은 심판을 안정적으로 교육하고 늘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에 대한 어떠한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것이 등록이 되면 자유롭게 하시던 분들의 폭이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진종오 위원님.

○진종오 위원 지금 상임심판, 심판 등록의무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종목 단체별로 심판이 정말로 많이 필요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예산 문제도 분명히 닥칠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체육계의 가장 큰 문제가 편파 판정으로 저한테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종목은 심판하고 선수가 겹쳐서 가능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저희가 살펴보고 판단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윤곽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심판 등록의무를 한다라는 건 저는 조금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형배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쭐게요.

심판의 자격 요건, 범위 이런 것을 규정하는 게 문체부장관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기단체나 국제경기나……

○민형배 위원 그냥 경기단체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 경기단체에서 필요한 심판의 자격 요건은 이런 것이고.

그런데 이게 어디에도 등록이 안 되어 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지금은 대한체육회의 심판위원회 규정이나 대한축구협회, 각 단체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아니, 이분이 이러이런 자격을 가진 심판이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도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경기단체 내에서만 되어 있고 법적인 근거는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법적인 근거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심판에 관해서.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심판을 둘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어떤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지 않으면 심판을 고용할 수 없다 그건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저희 의견이 아닙니다. 정부 의견이 아닙니다.

○민형배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아까 김승수 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기준이나 자격이나 등록에 문체부장관이 개입해야 될 여지가 뭐지요? 왜, 이유가 뭐지요? 그냥 이것 경기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놔두면 되는데, 그런 거지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예, 그래서 저희가 굳이 이것 필요 없다고……

○민형배 위원 그런데 필요 없다고 안 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아닙니다. 저희 쪽 문체부 의견은 이 심판 등록 의무에 대해서 삭제의견을 낸 겁니다.

○민형배 위원 아, 그래요? 그게 어디가……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수정의견이 삭제입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36페이지……

○소위원장 임오경 아니, 현행법에 심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 부분은.

○민형배 위원 아니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은 등록하는 것은 앞에 정의 조항에 넣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거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자율적으로 경기단체들이 해 오던 심판에 관한 업무를 법적 근거를 두는 것까지 오케이. 그런데 이게 문체부장관이 뭘 할 수 있느냐고요, 여기에 관해서? 그냥 육성하고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것 그건 오케이, 그것은

이 법에 정의 규정을 둬서 하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체부장관이 그 밖에 다른 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지금 위원님께서 육성 관련된 말씀 하시는 거지요? 육성이라는 게 좀……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런 것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든 어디서 하든 여기 정의 규정에 둬서 등록을 하든 어쩌든 14조 육성 이런 데까지 같이 포함시킨다고 하고, 그 밖의 다른 걸 문체부장관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4조(선수 등의 육성) 규정에 심판 넣는 것까지는 동의합니다.

○민형배 위원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다음부터는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심판을 둘 수 있다는 것은 저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법률로 심판의 자격 같은 걸 둘 필요 없다, 두 가지에서는……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경기단체에 맡겨 놓으면 될 일인데 굳이 가져올 필요 있나, 그러면 굳이 이런 정의 규정도 필요 없는 거예요?

○소위원장 임오경 정의 규정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상임 심판 형태로 해 가지고 지금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심판들 육성하는 예산도 있고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온 것……

○민형배 위원 제가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상임심판의 임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문체부가 체육기금을 대한체육회에 내려 주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심판 규정이 지금 경기단체에서부터 부처까지 굉장히 여러 단계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거네요. 그걸 지금 정비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저희가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선수랑 지도자 관련돼서는 규정이 있는데 실제 심판 같은 경우는 저희도 사실 그렇게 큰 사업이 많지 않았는데 예전에 태권도 관련해 가지고 한번 심판 편파 판정 때문에 학생 학부모가 자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상임심판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민형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처가 이것을 법적 범주 안으로 포섭해서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입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관리감독할 생각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육성 지원하는, 뒷받침하는 것만 놓고 나머지는 다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방향이?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알았어요. 저는 그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예,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 보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과 3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자료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의원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장의 체육시설 개방 협조의무와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 관련 학교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규정을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되는 학교시설에 대해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개별 학교의 부담이 완화되어 학교시설 개방의 활성화와 생활체육 환경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합니다. 국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공·사립학교의 경우 지자체별 규칙이나 조례 등 개별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의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방으로 파손된 학교시설의 유지·보수 비용, 생활체육 도중 발생한 사고 손해배상책임 등은 시설물 관리자인 학교장이 상당히 부담하게 됨에 따라서 실제로 학교시설의 개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 이에 대해서 문체부는 이용주체인 주민과 학교시설 이용 용도를 생활체육시설로 한정하는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이러한 현실적 판단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수정의견에 이용주체는 '주민'에 '등'을 포함해서 '주민 등', 이용 용도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만 학교시설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 규정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선 형평성 측면에서 국공립학교의 경우는 국가·지자체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공공영조물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민법에 따른 공작물 소유자로서 책임을 지는바 개정안처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면책만을 규정할 경우는 국공립학교는 배제되어 학교 간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상권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민법에 따른 점유자·소유자의 1차적인 배상책임은 면제하면서 3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 조항만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 논리적이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이에 대해 문체부에서도 관련 법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은 개방 대상 학교와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학교시설물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8페이지 조문대비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정의견대로 이용주체는 개정안은 주민인데 주민 등으로 확대하고 이용 용도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10페이지 5항 면책 규정에 대해서는 일단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자료는 4페이지, 참고조문은 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학교장은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도록 협조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육시설로 이용되는 학교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만 개정안 내용 중 학교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학교장의 민법상 책임 면제 규정의 도입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적용되는 법령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역에서 보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또 이용하고자 하는 생활체육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설 파손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부상에 대한 책임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리감독할 인력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장들이 학교시설 이용을 허락해 주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늘 주장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학생들이 있을 때는 학교장이 학교를 책임 지도록 하더라도 방과 후에 일반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였을 때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보면 관련 부서들이 있단 말이지요. 체육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리권을 위탁받을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학교장 책임은 면제되고 실질적으로도 주민들은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가 도모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도 지금 법안 내용들 중에서 세부적으로 좀 더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은 고민을 또 해 봐야 되겠지만서도 방향성은 저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여기에는 시설물을 파손했다든지 아니면 부상 등 이런 것을 당했을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 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손해에 대한 손배상을 우리가 요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기본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두더라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주체를 지자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위탁을 해

가지고 그런 공공기관에서 최종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는 방안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배현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배현진 위원** 제가 먼저 위원님들께…… 각 지역에 이미 학교 운동장 다 개방해서, 지금 아닌 곳도 있습니까?

○**박수현 위원** 아닙니다, 아직은.

○**배현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에 지금 안 쓰는 학교도 있습니까?

○**김재원 위원** 안 열어 줍니다.

○**배현진 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전부 개방해서 쓰고는 있는데요.

○**소위원장 임오경** 책임이 다 교장한테 전가가 되기 때문에……

○**배현진 위원** 그러니까 이겁니다. 교장선생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시설물 파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 안전에 관한 겁니다. 대단히 예민한 문제인데요. 학부모들이 일단 반대하세요. 주말에만 개방하거나 일몰 후에 개방하자 해도 일단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지역 생활체육자들한테 이것을 개방하자고 수없이 설득을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그 벽에 가로막히는 부분이 만약 열었다가 불의의 사고나 어떤 것들이 아이들한테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데 지금 답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부에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용주체에 ‘등’을 포함하자라고 하신 게,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주민 그다음에 생활체육 이렇게 한정하지 말고 등을 하자는 것은 어쨌든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아니더라도 타 지역 사람들이 쓰더라도 이렇게 다 할 수 있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자체부가 관리책임을 더 하겠다는 의지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관리책임을 더 하겠다라기보다도 주민과 같이 이용했을 때 꼭 주민이 아니어도 그 지역 외 주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범위를 조금 넓히고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배현진 위원** 죄송하지만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도 이용하시지 못하는데 지역주민이 아닌 분들이 와서 생활한다고 하면 대단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손된 것을 일일이 어떻게 누가 파손했는지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누가 다녀가셨는지 모르는데 그 학교를 실제 사용해야 되는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담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질문드릴 것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과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스쿨매니저사업을 실은 제가 모르는데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장 표광종** 체육진흥과장 표광종입니다.

문체부에서는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각 학교에 관리자, 매니저를 보내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스쿨매니저를 채용을 해서 학교에 보내주는 이런 사업을 서로 각기 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게 이른바 여러 가지 형태일 수 있는데 학교 어린이보안관이나 이런 게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대단히 부족해서 학부모들의 불만과 학교장 등의 불만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임오경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법안의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문제부가 좀 지혜롭게 보완을 해 주셔야 저희가 안심하고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등으로 범위를 그냥 확대한다거나 지금 관리주체에 대한 게 그냥 학교장이 일차적으로 면책 규정을 가진다라고 여기다가 우리가 규정하지만 실은 그걸 학교장이 외면할 수 없거든요. 항상 학부모들과…… 아시잖아요, 아이 키우시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결점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 정부 측에서.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장 표광종 위원님, 그 등에 대해서는 보완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저희가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동호회나 이런 데 교장선생님이 개방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지역주민이 아니신 분도 동호회 회원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법에서 주민으로 해 놓게 되면 법률 분쟁이나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 같다는 지점에서 우리가 현실 그대로를 법에다 좀 담아 주는 게 분쟁을 좀 낮춰 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시법에 생활체육시설, 전문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학교체육시설 같은 경우 전문체육시설도 있게 되는데 학교장이 생활체육시설만 개방을 하게 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현실을 그대로 담아 줘서 분쟁을 없애자라는 취지로 그렇게 수정 제안을 한 겁니다.

○배현진 위원 지금 현재 예약에 관한, 학교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예약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장 표광종 학교, 그러니까 시도……

○배현진 위원 학교장이 관리를 하는데 그 주체는 교육부지요, 문제부는 아니고. 등이라고 해서 포괄하자는 것은, 지금 등록자의 명의가 아니라 그 단체에 포함된 모두가 주민이 아닌 경우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장 표광종 타 지역주민도 와서 그 공간에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주민으로만 한정하게 되면 또 분쟁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예방하고자 수정 제안을 드린 겁니다.

○민형배 위원 교육부하고 좀 상의를 하셨나요? 교육부 의견 들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장 표광종 교육부에서는 기존 법에 개방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께서, 공공 목적으로 교장선생님께서 새로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어떤 형태든 간에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저희는……

○민형배 위원 교육부에서 반대하는데 우리가 이 법을 만들면 바로 충돌이 날 텐데……

○소위원장 임오경 이게 현재 학교체육 진흥법에는 지금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아니,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오랫동안 이 문제가 논란이 돼 있어서 이번에 정리할 때 제대로 해야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래서 교육부가 지금 어떤 스텐스예요? 어떤 태도입니까, 교육부는 이것 할 필요 없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이걸에 대해서 교육부는 교육부 관련 법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굳이 이걸 담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인데요.

○민형배 위원 지금 운영의 문제인데 그냥 그거면 되지……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리고 있는 거고 우리는 아무리 이쪽에서 이용을 좀 하려고 해도 자꾸 학교에서 제동을 거니까 그 길을 좀 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김승수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설 운영의 책임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학교 쪽에서, 즉 교육부 쪽에서 교육감 쪽에서 지자체로 옮겨 주지 않으면요 이 문제 안 풀려요. 제가 여러 가지를 계속 해 봤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을 만든 다음에 이걸 손을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우선 학부모들 반대는 어떤 경우에도 계속 있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담보를 해 줘야 돼요. ‘괜찮거든요. 우리 아이들 안전에 문제없거든요. 나중에 거기 문제 생기면 경찰하고 지자체가 책임질게요’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는 공립은 괜찮고 사립이 문제다 이렇게 해 놨는데 똑같아요, 사고가 나거나 시설이 훼손되거나 그러면. 그래서 이걸 어디선가 책임주체를 명확하게 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사용을 하는데 또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다 있단 말이에요. 비용도 있고 시간도 있고 조건이 다 있어요. 이용자 제한도 있고 조건이 다 있어서 이 조건에 대한 것까지 정리를 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걸 일정한 시간 이후 아니면 주말 이런 때는 학교가 쓰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학교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학교 체육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해야 돼요. 특히 지자체하고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걸 해야지 그냥 지금 여기 사립하고 공립만 차이를 둬 가지고 해서는 오히려 또 이것이, 이다음에 바꾸려면 진짜 더 어려워질 것 아니에요.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것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이 문화로, 관행으로 잘 해결해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요 지금은 그 부분까지 정리한 다음에 저는 이걸 개정을 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봐요. 좀 급하긴 한데……

○진종오 위원 저는 궁금한 부분이 사립학교도 운동장을 꼭 개방해야 되나요? 차라리 그냥 사립학교를 아예 빼 버리는 게 낫지 않나 생각도 들고 있고요. 왜냐하면 법령으로 이게 달라진다고 하는데 굳이 꼭 사립학교를 넣어야 되는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은 사립학교도 공립학교하고, 우리 지금 초등학교는 거의 사립이 거의 드물고 중고등학교에 조금 있는데, 아니 중고등학교는 많이 있는데, 고등학교에 특히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운영이 거의 공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학교 운영 자체가 대개 공립하고 다르지 않아요, 사립도, 물론 좀 특성화돼 있는 그런 영역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사립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건 굉장히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라고 해서 체육시설을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 왜냐하면 거기 운영이 다 공적 자금으로, 세금으로 대부분 운영되기 때문에, 사립학교도. 그리고 사립학교를

제외해 버리면 굉장히 줄어들어 버려요. 고등학교 같은 데는 많이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사립학교도 당연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다만 지금 이 책임 문제가, 책임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부분을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안은 아무리 검토할 내용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까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많다고 하더라도 좀 서둘러 줘야 돼요. 너무 오랫동안 이 문제가 안 풀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민들은 대개 다 교육부에다 책임을 돌리고 있고 지자체에다 책임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자체와 각 학교가 혹은 교육청이 무슨 MOU를 체결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정식으로 맺거나 해서 이것을 빨리 활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너무 많아요. 사실 이 스트레스가 되게 심해요, 이용자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고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사회적인 그런 갈등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조금 서둘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이건 본 의원이 발의한 거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문제점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물어보면 어떤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지금 65%를 지자체에서 다 넘고 있고,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시설입니다. 시설 확보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데 지금 문체부에서는 매칭사업으로 3 대 7로 해 놨어요. 30%밖에 지금 지원을 하지 않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다 지방으로 이양해 버리다 보니 지자체장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시설을 확충할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지금 이렇게 이 법안까지 발의해 가면서 하는 것은 저도 한계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누가 나서서 해야 되느냐? 문체부가 나서서 해야지요. 그런데 문체부가 필요한 법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매년 의원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체부 찾아가서 ‘시설 하나 이번에 조금 예산 반영시켜 주십시오’, 의원님들이 문체부 국장들한테 가서 아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어떻게든지 대안, 의견을 가지고 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상에 대학교를 제외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거라고 봐요. 초등교육법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이것도 보고 있는 거고요. 국가배상법과 민법이 헷갈리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그냥 학교장과 이용주체 간 도급계약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면 어떤지,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 대안은 전혀 안 가져오고 ‘문제가 있다. 교육부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문체부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으니 다음 소위에서 보완 내용을, 의결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저는 확실하게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제 개인을 위해서 발의한 건 절대 아닙니다.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앞서 배현진 위원님께서는 학교 개방을 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300명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보면 개방 안 해 주는 데가 80%가 넘습니다. 사건 사고 하나만 발생하면 바로 그냥 클로징합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희 의원들에게 찾아오고 또 인접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경기도 광명인데 서울 지역에서도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게 해 줬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시장님에게, 제가 시장님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인접 지역이니까. 지역이 완전하게 구분되어 있더라면 내 지역주민 중심으로 해야 되겠지만 인접 지역에서는 서로 좀 활용할,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잘했다라고 저는 해 준 케이스인데 그 정도로 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승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구 같은 경우도 시설이 지금 너무 부족한 걸 제가 현장 방문을 워낙 많이 한 사람으로서도 알고 있는데 반대로 지방 같은 경우는, 광주는 많으신가요? 시설이 많으신가요?

○**배현진 위원** 없지요.

○**소위원장 임오경**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부가 다음 소위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보완 내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건의 하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소위원장 임오경** 예.

○**배현진 위원** 그냥 문제부한테 대안을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걸 좀 저희가 정리해서 정확하게 대안을 가져오라고 하시지요. 왜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학교 운동장을 많이 개방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주민들만 사용하시는 건 아니고 다 다른 지역에서도 오시고, 지금하신 말씀 동일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확대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단히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이를테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교육부와의 협의, 지금 문제부가 다 체크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하고 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리고 인근 지역과의, 어떻게 그것을 수용할 건지. 등록…… 뭐라고 하지요, 신청을 하나요? 예약제 어떻게 운영 이런 사항들을 좀 저희가 정확하게 미션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박수현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문체부가 다음 회의 때 대안을 마련하는 거 저도 찬성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짚어 봐야 될 사안들이 워낙 종류가 많고 또 저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 또 처음 듣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종합적이고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체부에만 대안을 가져와라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이쪽 활동을 잘 안 해 봐서 모르는데 김승수 위원님 이 분야에 대한 국회 토론회나 무슨 공청회나 또 임오경 의원님 이 개정안 같은 법안이 발의됐던 이런 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다 모아서 우리 국회에서도, 정부는 정부대로 대안을 가져오고 또 토론회 와서 이야기도 하겠지만 우리 문체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토론회도 한번 조직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의견들을 우리가 다 모을 수 있는 대로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국회 차원의 노력도

한번 해서 종합적인 안을 좀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좀 드려 보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예, 위원님들 의견 잘 경청했고요. 문체부 잘……

○민형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요.

차관님, 저희들도 지금 박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하겠지만 꼭 교육부·행안부하고—지자체 하는 게 행안부니까—열른…… 이거 급합니다, 사실은. 아시잖아요. 이거 몇십 년 됐어요, 이 논의한 게.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경험한 것만 해도 15년째 됐거든요. 그러니까 급해요, 이게. 그런데 쉽게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런 때 정부가 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세 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안 되면 정말 TF라도 하나 꾸리셔서 학교체육시설을 어떻게 생활체육에 활용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진짜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관련 연관 법까지 다. 그래서 그 리포트를 먼저 한번 해 주세요. 그거 보고 안 되면 저는 이런 생각까지 있어요, 안 되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위낙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안이잖아요, 실제 이용자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처들이 제대로 협조를 안 해 주면 진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될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런 정도로 되게 심각하다, 그러니까 그 안을 꼭 좀 만들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지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다들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저게 협의가 아직까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항상 소위 이렇게 회의할 때 지난 21대 국회 때도 다른 부처와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에 그 부처의 관계자도 소위 회의 석상에 나와서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우리 법안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특정 부처와 굉장히 침예하게 대립된다거나 이견 있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거나 필요할 경우에 관계부처 공무원들까지 좀 출석시켜 가지고 질문할 건 질문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납득을 시키거나 이렇게 좀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학교시설의 이용뿐만 아니고 현장에서, 지역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이 각종 생활체육의 협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이 가입된 사람하고 가입이 안 된 사람들하고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 가지고 다툼들이 굉장히 심하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령으로 어떻게 좀 하나의 안을 제시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폐교가 지금 나날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폐교시설이 문화시설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고 체육시설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하고 문체부에서는, 가장 많이 문화·체육시설에 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앞으로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말씀하신 것같이 개인적으로도 사실 많은 분들이 시

설을 이용하는 거에는 불편함이 없고 많이 누려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처와의 어떠한 협의가 필요하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다만 아까 박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많아서 사실은 부처 안에서 뭔가 해결방안이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처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부처와의 협업과 또 뭔가 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노력은 하겠지만 어떠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께서 좀 구체적으로 오히려 주시면 그것들을 저희가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차관님, 아이들이 소중하고 그런 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맞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국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시설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같이 활용해야 되는 그러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부처 간에 얘기를 하면 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어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저희 위원들에게도 좀 자문을 구하시고 현장에서 직접 또 자문을 구하셔서 연구용역이라도 당장에 발주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결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1페이지, 정부 제출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장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을 통보하는 것으로 용어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자체장이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업 현황 등 수치적 통계 정도이므로 보고 절차를 통보 절차로 간소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에 기여하는 등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에 조문대비표 있는데 용어 하나 바꾸는 내용이고요. 참고자료는 2페이지, 참고조문은 3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상호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지자체 수행사무에 대한 중앙부처 보고사항을 통보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동법 개정 추진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이거는 뭐 보고에서 통보로 바꾸는 건데 큰 이견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5페이지입니다.

김영배 의원안은 체육시설업자가 휴·폐업하려는 때에는 전화통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휴·폐업 사전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므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신고 체육시설업자에 한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사후적으로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첫째, 휴·폐업 통지 대상으로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이용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일회성 이용자에게도 통지의무가 발생하여 체육시설업자의 관리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으므로 장기간 이용료를 미리 지급하고 이용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일반이용자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개정안에 따르면 1일 휴업인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자는 통지를 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하므로 1주일 이상 휴업 등 현실성 있는 휴업 통보 대상기간을 설정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셋째,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체육시설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 체육시설 내·외부에 공지 등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상 지자체장에 대한 사후적 휴·폐업 통보의무는 신고 체육시설업자에게만 부과되어 있으므로 등록 체육시설업자에게도 휴·폐업 통보를 하도록 함과 동시에 회원·일반이용자에 대한 휴·폐업 통지의무를 함께 부과하는 것이 시설업자 간 형평성에 부합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네 가지를 종합한 수정의견으로는 통지 대상을 실질적 이용자로 제한하고 사전통지 대상 휴업기간을 현실화하며 통지 대상 예외 규정, 등록 체육시설업자에게도 통보 및 통지의무 부과 및 체계·자구 정리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사전통보의무 대상 기간을 전문위원 수정안 1주일보다 더긴 1개월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조문대비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의 29조에 19조 1항을 포함하는 거는 등록 체육시설업자를 사후통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고 그에 따라 아래에 시·도지사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3항에서도 19조 1항은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사전통지 대상에도 개정안은 신고 체육시설업자만 들어 있는데 등록 체육시설업자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은 통지 대상 일반이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체 통지 방법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통지 대상 의무기간을 전문위원안은 1주일 이상 휴업인데 문체부는 1개월 이상 휴업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16페이지는 개정안·수정안에 따른 체계·자구 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7페

이지, 등록 및 체육시설업 종류 등 참고조문은 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께서는 이 법안에 관련돼서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제대로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정부 측 의견은 장미란 차관님이 의견을 말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전완희**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너무나 장황하게 정부 측 얘기까지 다 말씀해 주시니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체육시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지하게 하는 법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이용자 보호 확대를 위한 등록 체육시설업자 휴·폐업 통지의무 부과 신설,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한 휴업 통지 대상기간 설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도한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이용자에 대한 범위 설정 및 통지를 갈음하는 예외 규정의 신설을 수정 제안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박수현 위원** 전문위원님과 문체부의 휴업기간 1주일, 1개월…… 어떤, 왜 차이가 납니까? 각자 의견 말씀해 보시지요.

전문위원님 어떠세요? 왜 1주일…… 처음에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전완희** 현재 지자체의 체육시설업자가 지자체에다가 사후통보하는 거는 3개월 이상의 휴업을 휴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후통보니까. 그러나 이거는 사전통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8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업이 등록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업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체육교습업 등 다양하게 있는데 1개월 이상의 휴업만 통보해 가지고는……

그리고 실제로 강습료를 내는 게 보통, 물론 장기간 내는 아주, 통상은 1개월 단위로 내는 데가 많은데 1개월 냈는데 1개월 이상만 통보받으면 이것은 그 1개월짜리 등록권한 사람한테는 통보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되면 1개월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분쟁, 이 법이 만들어져도, 사실은 그런 분쟁을 없애자고 하는 법인데 그런 분쟁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합리적인 기간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도 이용자 편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1개월 휴업기간보다는 일주일만 휴업을 해도 사실은 통보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문위원의 의견이 오히려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 측, 그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사실 저도 일부 동의하는 바가 있기는 하지만 또 시설업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어떠한 경조사라든지 이러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을 경우에도 두 달 전에 통보를 하는 것은 시설업자들에 대해 좀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학원법, 의료법 등 유사 법령에서도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1개월 이상 휴업일 경우 통보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체육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학원법이랑 의료법에 1개월 이상 휴업할 때 사전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 저희가 전국적으로 한 6만 5000개 정도 시설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5만 5000개나 거의 6만 시설에 가까운 것이 대개 영세한 소규모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1인이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소수들이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일주일 같은 경우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피치 못하게 일주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랬을 경우 지금처럼 됐을 경우에 과태료를 일단 납부를 하고 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에 대해서 너무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저희가 1개월로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저는 지금 법에 이렇게 통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이런 것까지 입법사항이냐, 다른 유사 입법례를 보더라도 거의 시행령 아니면 시행규칙에 담아야 될 사항들을 너무 법으로 올렸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실무적으로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 또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 이런 걸 감안해서 입법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영이나 시행규칙으로 내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보면. 요즘 저희 관내에도 헬스클럽이 갑자기 폐업을 해서 문을 닫는 바람에 피해자가 지금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특히 회원제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 갑자기 문 닫고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소비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휴·폐업, 한 일주일 정도 휴·폐업에 대해서 통보까지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안은 이게 법에 담을 건지 아니면 하위법령에 담을 건지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체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갑자기 업주가 잠적했을 때 또 거기에 대한 이미 선납한 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환받을 수 없을 때 다른 쪽으로 뭔가 이게, 다른 유사 법령이나 민법이나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압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무언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책, 방안을 좀 고민해 가지고 법에 담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 이것은 피해 사례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류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배현진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저는 이 김영배 의원님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주일이냐 한 달이냐 이것은 저희가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나 하위규칙으로 설정하면 된다고 생각, 동의하는데 지금 문체부가 더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법을 이번에 하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더 보완사항으로 붙여 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부안과 절충점을 해서 저는 이 법을 오늘 통과시켜도 되지 않을까, 저희가 심사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박수현 위원 그러니까 굳이 계류시킬 필요까지는.....

○ 배현진 위원 예, 저도 계류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영세업체라도 통보할 그 능력이 되지 않는 업장이라면 영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돈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과태료를 부과해서 냈을 경우에, 이를테면 미용업 이런 경우에도 후에 이게 부당하다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예외사항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도 구제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보완책들이 있지요, 이미?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예, 질서 행위 규제법에 있습니다.

○ 배현진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디테일한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말씀을 나누시고 계류시키지 말고 지금 심사를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 생각 있으시면……

○ 박수현 위원 심사하십시오.

○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 의견 주십시오.

○ 김승수 위원 유사 입법례 감안해 가지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내릴 건 내리고 정리해서 다음에 의결하면 되지요, 이것은 크게 바쁜 법안도 아닌데.

○ 배현진 위원 바쁜 게 아니라 그래도 법안을 낸 의원님은 오늘 심사 결과를 기다리실 텐데요.

○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문 정리를 해야 되니까, 시행규칙으로 내려야 될 것 법에 남겨 둘 것 이런 부분들을.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 김홍필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수현 위원 그러면 그것만 그렇게 수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여기에 못 박지 말고 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수정해서 의결하시는 방법이 어떤가 싶습니다.

○ 배현진 위원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임오경 동의하십니까?

○ 김승수 위원 기간뿐만 아니고 구체적인 방법론 이런 것까지도 굳이 여기 법에 담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다른 입법례를 보더라도 다 시행규칙에 있는 것 아니에요, 보면?

○ 박수현 위원 어떤 부분이……

○ 배현진 위원 김영배 의원님 안은 기간을 특정한 게 아니라 휴·폐업 전에 어쨌든 14일 이내에 이것을 통지해라 이게 방점이 찍힌 법안이잖아요. 어찌 되었든 알려라, 이용자들에게. 그리고 실제 이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저희 국회와 정부의 고민이 담긴 부분인데 김영배 의원님 안의 취지대로 계류하지 말고 심사함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 소위원장 임오경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 김재원 위원 문체부에서 말씀하시는 1개월이라는 기간은 지자체나 이런 데 신고하는 것을 1개월이라고 해 놓은 거고요. 의료법이나 결혼증개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환자 및 환자 보호자, 그러니까 이용자에게는 14일 전까지 통보를 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이라는 부분의 산정 이유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빨리 알려 주는 게 좋지요, 이용자들에게는.

○ 배현진 위원 1개월은 휴업기간, 그런데 14일은 통보기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지

기간.

○**소위원장 임오경** 김영배 의원님 법안은 문제가 크게 없는……

○**박수현 위원** 예.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2건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배현진 위원** 아니, 이게 지금 통합 조정된 건가요?

○**전문위원 전완희** 그러면 위원님, 수정……

○**소위원장 임오경** 지금 의견이 없어서……

○**배현진 위원** 김영배 의원님 원안대로 하는 거잖아요?

○**박수현 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배현진 위원님 안은 김영배 의원님 원안대로 가결 하자는 거니까 저도 거기에 큰 반대 없어요.

○**전문위원 전완희**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으로 하고 기간만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걸로……

○**소위원장 임오경** 예?

○**전문위원 전완희** 수정의견을 다 수용하고 기간만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걸로 그렇게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까?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통보하는 것, 과태료 100만 원 하는 것은 그대로 가고 휴업·폐업기간을 일주일 이상으로 할 거냐 한 달 이상으로 할 거냐 이 부분은 시행령으로 내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자는 거지요?

○**전문위원 전완희** 예.

○**소위원장 임오경** 괜찮으시겠습니까?

○**민형배 위원** 통보는 해야 되니까, 통보 안 하면 과태료……

○**박수현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괜찮으세요?

○**김승수 위원** 저는 29조 3항 전체가 입법 내용으로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시행령으로 내려야 된다고. 개정 아니에요, 수정의견이?

○**소위원장 임오경** 29조 3항 신설이에요, 신설.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것 신설이니까……

○**민형배 위원** 통보해 줄 필요 없다?

○**김승수 위원** 아니,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전화통화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입법으로 할 사항이냐 이거지요, 이렇게 통보하여야 된다 하면 되지.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말씀하신 대로 휴업기간, 통보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같이 내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그러면 통보 방법도 시행령에 같이, 정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휴업기간과 통보 방법을 같이 시행령에 위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체계·자구 정리를 하겠습니다.

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위원님, 원래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행령 말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규칙으로 해 주십시오.

○박수현 위원 시행규칙으로?

○전문위원 전완희 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렇게 조문 정리해서 통과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러시지요.

○박수현 위원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면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셔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2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관광진흥법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제출안과 정연욱 의원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관광특구 대상 지역의 시설요건을 시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관광특구 지정요건은 하단에 열거하였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관광특구의 시설요건을 시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양하여 지역별 관광지의 특성을 반영하려는 취지로써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시설요건이 지나치게 일률적이거나 구분이 모호하다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시설요건을 조례로 이양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수용태세 증진이라는 관광특구 지정 취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시행일을 공포 후 1년 이후로 하였으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광특구 문체부령, 시행규칙이 삭제될 예정이므로 각 시도가 그 전에 조속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또한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는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안은 이를 포함하고 있으나 정연욱 의원안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아래는 체계·자구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여 수정의견에 담았습니다. 조문은 5페이지부터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6페이지 하단의 2항에서 기존의 안은 특례시를 시도를 인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은 시도 조례와 특례시 조례로 나뉘어야 되기 때문에 특례시를 2항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광특구 특례 사항은 3페이지, 시설요건은 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내용이 유사하므로 정부안하고 정연욱 의원안을 함께 심사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장미란 지역의 관광특구는 관광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 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지정 시설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관광특구 지정 시설요건을 지자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관광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의 의견 주십시오.

○ 박수현 위원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그러면 관광특구의 최종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나 지자체장이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바꾸자는 거지요, 조례로?

○ 전문위원 전완희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인데……

○ 박수현 위원 부령으로 돼 있잖아요?

○ 전문위원 전완희 그걸 시도 조례로 위임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제가 말씀드려도……

○ 박수현 위원 그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지정권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시설기준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문체부 부령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로 내리겠다는 겁니다. 시설기준입니다.

○ 박수현 위원 일단 알겠어요, 시설기준.

새로운 개념이라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현진 위원님 지역구 송파구가 관광특구다, 문화관광부장관령으로 정한. 그것은 정부가 공식 인정한 특구이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보면 거기를 가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와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일 텐데, 경쟁력이 생기는 것일 텐데 시·도지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시설기준이라고 하지만 관광특구가 굉장히 많이 남발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나 다 자기 지역 관광특구 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이게 뭐지, 어디 어디가 다 관광특구라 하면 어떻게 그걸 보게 될까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구를 가진 의원 입장에서 보면 관광특구로 지정을 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지원과 이런 것들을 하는 정부 책임을 지자체로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첫째는 관광특구의 남발, 두 번째 숫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어떤 변별성과 차별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여서 오히려 관광특구의 지정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우려, 제가 혹시 과문해서 잘 몰라서 질문하는 건지 모르지만 언뜻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김승수 위원 답변하기 전에 저도 박수현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이라서 답변하실 때, 지금 이게 관광단지 지정 절차를 하향으로 내려 줌으로써, 또 뒤의 정연욱 의원안도 보면 인구감소지역은 시장·군수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법을 바꿨을 때 우려되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좀 설

명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금 관광단지 지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지역 관광이 활성화될 거다 하는 그런 장점과 반대로 우려되는 단점이 있으면 이걸 얘기해야지 우리가 이 법안을 하는 데 판단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지요.

○박수현 위원 어떻게 제 의견을 저보다 더 잘 말씀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김근호 좀 전에 박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법은 관광특구에 들어가는 시설요건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이전에 지정요건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요건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 시설과 관련된 요건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반은 이해를 하셨고 반은 전달이 안 됐어요. 지정요건과 시설요건의 충돌, 차이 이걸 어떻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습니까라고 지금 질문하신 건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정은 문화부장관이 하는데 시설은 지자체장이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김근호 지정은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 지금 앞에 정부안하고 정연욱 의원안은 시설요건이지만 뒤의 정연욱 의원님 법은 지정요건을 인구감소지역은 시장·군수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끓어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민형배 위원 지정요건과 시설요건의 주체가 다를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특구라고 되어 있으면 시설도 기본적으로 이런 게 갖춰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전완희 전문위원이 보충설명 잠깐만 드리면요, 현재 지정요건은 1페이지 하단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봤습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그렇게 있는데 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인데, 그리고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시설요건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요건이 보시면 알겠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상당히 모호하고……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지정요건하고 시설요건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시·도지사로?

○전문위원 전완희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지금 다 거꾸로 알고 있잖아요?

○전문위원 전완희 그래서 그 시설요건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오케이.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두 분 이해하신 것처럼 이해를 했어요.

○소위원장 임오경 아니에요,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김승수 위원 아니에요, 지금 이 앞에는 시설요건이 있고 뒤의 정연욱 의원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요건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소위원장 임오경 관광부령으로 있어요, 이것.

○민형배 위원 지정요건이…… 그러니까요.

○전문위원 전완희 지정요건 네 가지 중의 하나가 시설요건입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지정하는 것을 시·도지사가 하는 것을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고 개정안이 10번 조항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전완희** 지금 법안이 그 법안은 다른 법안……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좀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민형배 위원** 지정요건과 시설요건을 일치시킨 거예요?

○**소위원장 임오경** 아니요, 아닙니다. 일치시킨 것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김영미** 관광기반과 김영미 사무관입니다.

저희 관광특구는 지정요건이 총 네 가지가 있어요. 관광객 수 10만명 그다음에 비분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관광토지가 10% 이하 그다음에 지금 개정안에 되어 있는 시설요건이 공통적으로 총 네 가지 지정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그리고 말씀하기 전에 지정권자는 시도고 저희는 협의권만 있습니다, 사전에.

○**민형배 위원** 문체부에는?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김영미** 예. 그런데 그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이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관광특구가 사실 자자체별로, 지역별로 굉장히 관광여건이 다르고 특색이 있다 보니까 시설요건이 일률적으로 저희 부령으로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을 자자체가 조례로 시도가 정하게 해서 조금 관광특구 특색을 살려 보려고 자자체 조례로 이양하는, 위임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연욱 의원실과 저희 정부안은 사실 똑같아요.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말고 뒤에 10번까지 같이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10번은 지금 지정요건을 시장·군수가 인구감소지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수현 위원이나 제가 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김영미** 10번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 보고 계시는 거지요?

○**전문위원 전완희** 소규모 관광단지 그 법을 말씀하시는 것 혹시 아닐까요.

○**소위원장 임오경** 정연욱 의원님 것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정연욱 의원안이 뒤에 따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연결되니까 같이 설명을……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세 번째 법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다른 것을, 그건 다른 거고요.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니까 같이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소위원장 임오경** 내용이 좀 다르……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아니요.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연결되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규모 관광단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관광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그게 연결되는 상황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법 자체는 그 법하고 관계는 없는 겁니다.

○**김승수 위원** 시설요건을 다양화하는 거야 일리가 있다 하지만 박수현 위원이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광단지 자체가 차별화나 특성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후죽순으로 남발될 그럴 가능성이 없느냐 하는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관광특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문위원 전완희 지금 전문위원이 잠깐만 설명드리면요 이 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특구, 용어가 조금 헷갈립니다. 관광특구에 관한 법이고 뒤에 있는 정연욱 의원안 법은 외국인과 관계없이 지역의 내국인들, 주로 내국인 관광단지, 저희 법에서 명확히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것은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관광특구에 관한 법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7항하고 8항, 정부안과 정연욱 의원안이 유사해서 이것을 함께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7항과 8항을 보시면 됩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봐주세요.

그러니까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 지역이 갖춰야 될 시설요건을 지금까지 문체부령으로 정해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는데 이걸 시도에 넘겨서 각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관광특구 내용 중에 시설요건이 있는데……

○민형배 위원 아니, 그 말은 아까 계속 했잖아요?

○전문위원 전완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관광특구 그러면 시설요건 기준이 일률적이었어요, 전국의 모든 관광특구에?

○전문위원 전완희 예, 4페이지에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금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참고자료2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것을 경주 가면 달라, 목포 가면 달라 이렇게 다 바뀐단 말씀이지요?

○전문위원 전완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그런 취지입니다.

○민형배 위원 그렇게 하도록 자율성을 지자체한테 부여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예요. 목포에 가는 분이나 경주에 가는 분이나 다 관광특구라고 되어 있으면 이런 정도의 시설이 되어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아까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있는 기준이 최소기준이거든요. 4페이지에 보시면……

○민형배 위원 당연히 최소기준, 미니멈. 요건이라는 건 미니멈이지요. 이게 돼야 관광특구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열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곳은 세 가지만 있어도 되고 어떤 곳은 일곱 가지가 있어도 되고 어떤 곳은 열 가지가 있어도 된다 이렇게 바뀌면 말씀하시는 게 수요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를테면 ‘여기도 이런 게 최소한 갖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 보니까 없어’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문제제기를 하신 거라고요. 저도 같은 문제의식이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그래서 저희가 최소기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최소기준은 모든 지자체 조례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건 없는데요, 여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의를, 과정을 협의를 할 텐데……

○민형배 위원 그걸 법령으로 정해 놓지 않고 지자체하고 협의해 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라세요. 그러면 매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지자체하고 협의를 할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지금 현재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경주하고 목포가 다 똑같은 관광특구인데 시설요건이 최소기준은 다 갖춰야 되는 거냐, 아니면 최소기준은 아니라도 그냥 시도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거냐?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저희 계획은 최소기준은 마련하고……

○민형배 위원 그러면 최소기준을 넣어 놔야지요, 시행령이 됐든 법령이 됐든. 그래야지 안 헷갈릴 것 같은데요.

○김재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

○소위원장 임오경 예, 말씀하세요.

○김재원 위원 방금 민형배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지금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그 요건을 다 못 갖추고도 지자체장들끼리 합의를 하면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민형배 위원 아니, 어디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최소기준이……

○김재원 위원 그렇게 되면 관광특구만 남발이 되고 시설요건은 실질적으로는 갖추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박수현 위원님의 원래 문제 제기가 그거였어요.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 저 한 말씀 드리면 특구시설 지정 시 지금 저희가 지역 공통 기준과 그리고 지역 특성 기준 이 두 가지로 설정하도록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자구를 넣어서?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현재 네 가지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위원장 임오경 시설 지정 시 지금 지역 조례로 다 넘기는 것보다는……

○배현진 위원 그러니까 최소기준은 기본적으로 넣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소기준 외에 해당 시도가 특례시 조례로 자율성을 갖도록 함 이렇게 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민형배 위원 저는 최소기준도 필요 없이 지자체가 관광특구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이려면 오케이에요, 그것은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런 건가요, 그런 뜻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아니요. 그런데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건 갖추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세요, 얼른. 관광특구 시설기준의 최소기준은 정해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그 말은 사실은 하나 마나 한 얘기예요. 그 말은 하나 마나 한 얘기라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있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지자체는 최소기준은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특성에 따라서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사업정책관 김근호 할 수 있는데 현재는 법령에만, 저희 문화부령에만 있으니까 조례로 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민형배 위원 그래도 전달이 잘 안 되네요.

그냥 관광특구 지정을 자자체가 알아서 하세요, 광역지자체가 알아서 하세요 할 겁니까 아니면 문체부가 최소기준은 이런 겁니다 할 겁니까, 시설기준을? 관광특구 지정 중에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시설기준을 자율에 맡길 겁니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줄 겁니까?

사무관님, 사무관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김영미 저희도 개정할 때 약간 우려사항이 있어서…… 사실 조례 제정할 때 저희랑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보시면 여기에 ‘공공 편익시설 및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최소기준, 지금 현재……

○민형배 위원 아, 이게 최소기준이에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김영미 예, 최소기준 이거는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

○민형배 위원 그러면 이대로 놔두면요 여관이 하나 있어도 되고 4성 호텔이 있어도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기준이 아니에요.

○김재원 위원 그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김영미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게 뭐……

○민형배 위원 숙박시설이 있어야 된다가 무슨 기준이에요. 기준이 아니지요, 이런 건.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김영미 아니, 그러니까 지금 1개 이상 충족시킬 것 이런 식으로 부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자체 조례로 만들 때 저희가 이 기준보다는 훨씬 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자체랑 좀 협의를 통해서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입법 의도가 지금 시·도지사에게 시설기준은 위임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김영미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김영미 하지만 저희가 협의는 진행……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다음 문제고……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김영미 예, 자자체……

○민형배 위원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협의는. 자자체에 맡긴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김영미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래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박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형배 위원님이나 저나 여러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아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김영미 예.

○박수현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좀 더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들어 선택권을 가지고 만들자는 취지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김영미 예.

○**박수현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최소 요건마저도 이게 갖추어지지 않을 우려를 하고 계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하라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김영미** 가이드라인 정도를 저희도 좀 만들어서 지자체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말씀하신 시행규칙의 그런 시설요건에 만약에 공공편익시설 하면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이렇게 지금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김영미** 예, 저희들 지금 공공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통신이나 전기시설은 기본적으로 있어서 화장실이나 주차장 뭐 이런 시설은 반드시……

○**배현진 위원** 그러니까 이건 이 법안에 지금 적용 있으니까 다 기본으로 갖추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김영미** 예, 맞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러면 그 최소 요건은 갖추는 거네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관광특구의 남발, 두 번째는 관광특구의 퀄리티 저하 이 두 가지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김영미** 저희 남발 같은 경우는 좀 생길 수 없는 이유가 지금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이상이 되어야만, 서울시는 50만인데요, 충족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비관광토지가 10% 이하여야만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요건을 자자체에 위임을 한다 해도 자자체가 마음대로……

○**배현진 위원** 이해됐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두 번째, 김승수 의원안은 현재 문체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담여행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전담여행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전담여행사 취소 관련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담여행사의 지정·관리 등을 법령이 아니라 문체부 지침인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고 법적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분쟁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담여행사는 현재 중국만 해당되는데, 1998년 5월 중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다른 국가도 도입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개정안에서는 국가를 중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소송이 2019년까지 73건 발생하였으나 문체부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한국여행업협회나 한국통역안내사협회는 동의의견이라고 문체부를 통

하여 전달받았습니다.

14페이지에 조문대비표가 있는데 별도의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 현황은 11페이지, 관련 입법례 등은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현행 문체부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를 규정하여 전담여행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동 지침은 한중 정부 간 양해각서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 법규성은 인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유사한 내용의 소송 제기가 계속되는바 관련 규정의 신설로 전담여행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의 의견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 이 부분은 차관님 설명과 같이 지금 문체부 규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정취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서 아예 법으로 이거를 확실하게 근거 조항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한 소송 제기 이런 것들을 좀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중국 관광의 효율성이라 그럴까요,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제도의 안정적 운영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통역안내사협회 등 관련 단체가 이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현행 문체부 지침상의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는 이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형배 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요.

전담여행사 지정이 좀 효과가 있나요? 중국 관광객 유치나……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약 190개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확대가 된 거예요, 이전보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그동안 죽 굴곡은 있었는데……

○민형배 위원 관광객 수가 늘어난…… 그런데 근래에는, 요 몇 년 새는 엄청 줄었잖아요, 한한령……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좀 줄어들었고요 다시……

○민형배 위원 아니, 코로나보다도 한한령이 더 문제였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그렇지만 평균 한 150~200개 내외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는 그러면 다른 국가도 이런 전담여행사 제도를 도입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중국 말고 다른 나라들……

○민형배 위원 예,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아니요, 저희는 지금 이 제도의 발단 자체가 사실은 좀 외교적인 문제로……

○민형배 위원 그거는 여기 지금 다 설명해 놓으셨고, 그러니까 이 전담여행사 제도의 효과가 좀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다른 국가에는 전담여행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다만 효과는 있는데 그 효과의 맥락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여행사가 그 단체들 많이 데려오고 마케팅이 잘 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중국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민형배 위원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할게요.

일본 전담여행사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부정적인 게…… 왜냐하면 이 제도가, 아까 계속 같은 말씀이지만 발단이 외교적인 그런 문제, 중국이 해외에 국민들이 나갔을 때 좀 그 나라에서 관리를 해 달라, 예를 들면 그런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민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차관님, 현재 관광 관련 양국 간 양해각서 협정이 체결된 국가는 그러면 중국 외에 몇 개국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중국 외에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저희가 관광협정이나 아니면……

○소위원장 임오경 외교적인 측면에서 지금 몇 개국이나……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MOU가 체결되어 있는 나라는 한 40개 정도 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아니, 관광 관련 양국 간 협정 체결된 국가, 지금 이 전담여행사.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협정 또는 MOU가 체결된 국가는 한 40여 개국 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래서 이게 전담여행사로 다 이렇게 지금 매칭이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그런데 이 전담여행사 제도를 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가 중국은 자국민들이 안에서 통신들 관리하는 것처럼 해외에 나갔을 때도 자국민들에 대해서 관리하겠다라는 정부의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일본이나 그 여타 다른 나라들은 그런 목적이 없기 때문에 양국 간 관광 그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그 외 다른 기타사항, 안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는 겁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중국 측의 요구겠지요, 국가적 특성 때문에.

○배현진 위원 중국 측의 요구인 거지요.

○김승수 위원 중국의 필요성도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위낙 저가 덤픽 관광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보면 한국 관광 오고 나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이 생긴다 그럴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여행사가 관리하도록 그런 양국의 이해관계가 같이 일치가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사업정책관 김근호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같아……

○민형배 위원 아니, 그래서 자꾸…… 과장님, 이것의 다른 국가로의 확대가 효과가 있느냐고, 있을 것 같냐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데 자꾸 다른 소리 하시네요.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면 앞으로 이 양국 간 양해각서를 해서 전담여행사 국가를 더 늘려 나갈, 외교 차원에서 더 늘려 나갈 생각은 정부 차원에서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사업정책관 김근호 아니요, 없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면 유일하게 그냥 중국만?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그럴 필요가 없지요, 요구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소위원장 임오경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구를 한다라면 우리는 다 전담여행사로 이렇게 체결해야 되는 겁니까?

○배현진 위원 아니, 중국 정부가……

○소위원장 임오경 아니, 요구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

○배현진 위원 그러니까 외교상으로 그 요청을 우리가 수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외에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사업정책관 김근호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나 하면 전담여행사로 했을 때 우리가 외교적으로도 효과가 있고 우리에게도 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저희가 장점도 없는데 저쪽에서, 중국에서 요청한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사업정책관 김근호 물론 저희가 중국인 관광객 송출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작동된 거고요. 또 여러 가지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어……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중국 같은 경우는 한 한령이라는 거를 딱 그 국가가 걸면 자국 국민들이 여행을 가지 않는 이런 힘이 작동하는 특수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외의 국가들은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기 때문에 그 외는 염려를 우리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어느 나라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최근에 보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양국 간의 문제가 국민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자 문제 그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도 보면 양국 간에 적극적으로 그런 전담여행사 문제라든지 다른 제도적인 해결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사업정책관 김근호 고민은 저희가 당연히 하고 있고요. 다만 중국과의 유사한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 나라들에서 좀 뭔가 다른 식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서 동의 안 하는 걸 굳이 우리가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전담여행사 지정했을 때 양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한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법안 하면서도. 그러니까 꼭 이제 중국 외에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사업정책관 김근호 예, 알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저도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안에……

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세 번째, 정연욱 의원안은 새롭게 소규모 관광단지라는 개념을 신설해서 이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며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면적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의 지정권자를…… 아까는 특구였고 현행 관광단지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인데 새롭게 만드는 조금 작은 규모의 소규모 관광단지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 지정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시장·군수에게 지정권을 주고 이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정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따른 소규모 공공단지 도입 시 지역 수요와 특색에 맞는 관광자원의 개발이 가능하게 하며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가와 소득 증대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개정안 비교표를 두었습니다.

먼저 네 번째까지 붉은 칸은 법규에서, 이 법의 개정안에서 직접 규정하는 사항이고 밑의 두 개는 법이 되면 문체부 시행령에서 지정·반영하겠다는 안입니다.

먼저 적용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이 2021년에 지정됐는데 89개입니다. 그러나 그중에 정연욱 의원안에서 광역시의 자치구 5개는 빼겠다 해서 84개가 해당되고 지정권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관광단지는 시장·군수, 그러나 여기에 또 구청장은 제외하겠다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도 현행 관광단지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들어가 있으나 이것은 시장·군수가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이해상충 소지 등을 감안해서 시장·군수는 제외하고 공공법인과 민간만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마련이 되면 문체부 시행규칙에서 반영하겠다는 안으로서는 규모가 현행 관광단지는 50만m² 이상인데 소규모 관광단지는 5만m² 이상 30만m²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의도가 290만m²이고 국회의사당은 33만m²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뒷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개별법에 따른 기존 관광단지의 적용 혜택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고요. 아래 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추가 검토사항은 소규모 관광단지의 경우 지정권자를 현행 관광단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하는데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5개 지역, 부산 3개 대구 2개가 제외되었는데 이러한 해당 지역도 지역소멸 우려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점과 지정 주기가 5년으로 향후 도시화율이 높지 않은 자치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에 미리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한편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에 따른 관광단지의 남발, 난개발 및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 규모를 문체부의 시행규

칙안처럼 30만㎡ 미만으로 할 경우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지역의 경우라도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대비표는 21페이지에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등 참고자료는 18~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지속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추세 속에서 지역소멸 문제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 관광단지에 비해서 작은 면적을 비교적 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의 의견 주십시오.

○**박수현 위원** 우선 인구감소지역 89개 중에 자치구를 제외할 실익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앞으로 5년마다 되고 계속 그런 추세는 이어질 거라는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는데…… 그리고 제외된 해당 자치구의 의견은 들어 보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지금 말씀하신 그 5개의 자치구는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비해서 도시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것에 대한 발표를 했을 때 제외된 지역에서의 다른 이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이걸 그대로 놔두면 부작용이 있나요, 구를 그대로 놔두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화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취지에는, 이 지역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민형배 위원** 군·구 단위에도 농촌지역을 넓게 포함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어요, 그건 안 보신 것 같은데.

○**김승수 위원** 그렇게 보면, 이미 관광단지로 지정된 데 보면 민형배 위원님 잘 아시는 광산구도 있고 울산 북구도 있어요. 기존의 구가 관광단지로 지정된 구가 있는데 지금 인구감소지역 구를 거기서 제외시킨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지요.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는데 관광단지 남설될 경우의 문제 또 그렇지만 이렇게 풀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구노력할 수 있는 뭔가 수단을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형평성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사실 소규모 관광단지는 2024 경제정책 방향으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해서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방을 관광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일조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제도인데 인구감소지역 자치구는 고밀도 도시로서 사실 전 지역이 상업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도시화율이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고 제반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서 제외하였습니다.

○**배현진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본 기사가 하나 있는데 지금 못 찾아서 못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완전 인구소멸도시가 하나 있는데 도시 전체를 예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기모노 상점을 체크인 프런트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도시 전체가 활기를 띤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농촌지역이나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이런 입법 지금 여태까지 없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배현진 위원 그래서 일단은 뭔가 활로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고,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 상당히 타당하기 때문에 이후에 후속 입법이나 이런 것들로 다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제가 여기서……

○민형배 위원 아니, 여기서 정부가 구 단위를 포함하는 것이 부작용이 없다면 포함시켜 놓으면 될 일인데 이걸 굳이 뺀 이유가 아까 인구소멸지역이 아니다라고 한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게 인구감소지역도 있고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도 있을 텐데 이걸 포함시켰을 때 부작용이 없다면 그냥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빼겠다는 것 아니에요?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그건 더더욱 형평성에 안 맞는 거고.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제도를 저희가 올해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할 때 3종 세트라고 해 가지고 우리는 소규모 관광단지 그다음에 행안부는 세컨드 훈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규제 완화를 하는 거였고 그때 세운 기준이 뭐냐 하면 수도권하고 그다음에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강화도라든지 아니면 연천군 이런 접경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지만 수도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지역에서는 저희한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도 가서, 장관님도 직접 가셔서 보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5개 자치구 이쪽에서는 사실은 정말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심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이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게 그런 것까지도,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사실 빼게 됐습니다. 그런 맥락이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진 위원 요구가 없어 가지고……

○민형배 위원 갈수록 문제를 더 꼬이게 하시네.

○소위원장 임오경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조 원씩이 마련돼서 저희가 지역균형 발전에 투자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지금 투자하고 있음에도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조 원씩을 투자함에도 지금 좋은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씩 나가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저희가 또 지자체에서 더 소규모 관광단지를 활성화를 시키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관광단지는 저희가 여러 가지 세제나 혜택을

주는데 주된 개발자가 민간개발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이 법을 왜 정부가 안 내고 이를테면 청부입법을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청부입법은 아니고 정연육 의원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해서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넘겨 주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그런데 이게 1월 달부터 계속 발표가 됐기 때문에……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인지를 하시고 하신 겁니다.

○민형배 위원 정부 정책 죽 진행되는 여기 세 가지, 생활인구 확대, 방문인구 확대, 정주인구 확대 이걸 겨냥한 거잖아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게 정부 정책이었고 그걸 지금 의원 한 분이 받아서 해 준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그냥 정부가 이걸 안 하고 넘겨준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묻는 건데…… 특별히 이런 복잡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아니요, 저희가 넘겨 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관심 있는 의원실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민형배 위원 아니라고 하면 됐어요. 제가 일하는 방식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환경부하고, 30만㎡ 미만으로 할 경우에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 앞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환경 내지는 요건이 될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것 충분히 상의를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그리고……

○민형배 위원 여기 보면 지금 정확하게 안 돼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저희가 환경부 의견을 받은 거고 부가말씀 드리면 원래 50만㎡ 이상이면 일반 환경영향평가 그것은 사계절을 다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더 걸리는데 이에 반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두 계절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도 저희한테 동의를 해 준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돼 있다는 거잖아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30만㎡ 미만이면.

○민형배 위원 환경부에서 이걸 동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가자고 돼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김승수 위원 어쨌거나 인구감소 광역시, 특별히 구 지역, 특별시는 없지만서도 구 지역은 제외시키는 게 아니고 포함해야 된다고 보고 다들 그렇게 동의를 하시니까……

대표적으로 대구만 하더라도 남구·서구인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관광지로 알려져 있는 앞산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서구 같은 경우 바로 옆에 금호강이 흐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광단지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활로를 찾을 필요성이 있지 제외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 배현진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제외시키는 건 아니고 응답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 배현진 위원 그러니까 그냥 포함해서 하시지요, 심사를 해서.

○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저희는 위원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 박수현 위원 실익이 없어, 제외하는 실익이.

○ 배현진 위원 위원님들께서 포함해서 의결하시지요.

○ 소위원장 임오경 다른 의견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이것 관련돼서……

○ 민형배 위원 아니, 구를 포함시키는 것만 하여튼……

○ 소위원장 임오경 지금 말씀을 계속해 주시는데 소멸예정지역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도록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관광으로 인구밀집을 거주 인구, 생활인구를 하도록 하자는 건데, 하자는 범인데 그러면 인구밀집 자치구를 제외하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를 들면 이 제도가 발표되고 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소규모, 진짜 인구감소가 많은 그런 지역에서 왜 이런 지역까지 해 주냐 또 이런 반론도 있기는 있습니다.

○ 소위원장 임오경 알겠습니다.

○ 배현진 위원 가시지요.

○ 박수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는 일률된 기준을 잘 가져야지, 감소지역인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 배현진 위원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알겠습니다.

○ 소위원장 임오경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4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완희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 검토에서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구성을 보면 1장 총칙에서 목적, 정의,

국가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2장 치유관광산업 육성에서 기본계획·시행계획, 협력체계의 구축, 치유관광사업 등록,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그리고 제3장에서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오른쪽 제4장에서는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 제5장에서는 보착. 제6장 별칙이고 시행은 공포 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는 21대 국회에서 공청회를 진행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총괄적으로 이 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제정안은 웰니스관광을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추구하는 치유관광으로 정의하고 치유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취지인데 현재까지 웰니스관광의 명확한 정의와 대상, 사업 범위, 재정 지원 등 제도적 기반 미비로 관광산업으로서 체계적 육성의 한계가 있고 각 부처에서 단절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는 치유자원을 관광산업에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른쪽 부처별 웰니스 관광자원 개발 현황을 보면 해양치유센터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의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치유의 숲 등 관련해서 산림청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 등과 관련한 농진청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8쪽, 조문별로 검토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정의 규정에서는 치유관광,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치유관광사업자, 그밖에 치유관광산업, 치유관광산업지구, 치유관광서비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근거 법률에 웰니스 개념을 치유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웰니스관광이라는 용어를 치유관광으로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치유관광에 웰니스에 포함되어 있는 웰빙이나 행복의 의미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다고 보여서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에 추가해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이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에 일단 반영해 두었습니다.

치유관광자원은 경관·온천·음식 등을 예시로 들며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한편 의료관광의 영역인 진료·치료·수술 등과도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을 수립할 때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하였으나 기재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수정의견에 반영해 두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인데 기본계획은 문체부장관이 5년마다, 시행계획은 문체부장관이 매년마다 하는 내용이고 육성을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산업계·학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치유관광사업의 등록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취소 그리고 양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유관광사업을 사업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지원 및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경우는 제주도와 다르게 특별도지사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할 필요성이 높으므로 제정안에 따르더라도 실제 등록하는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그 산하의 시장·군수와 중복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령 등에서 절차적으로 보완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치유관광사업의 등록은 재량사항으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등록 결격사유 등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조항을 두지 않고 관련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하단 체계·자구 관련 사항으로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은 사용이 되었으나 그 전에 약칭이 안 되어 있어서 9조 1항에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은 문체부장관이 치유관광객의 편의를 돋기 위해서 치유관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우수치유관광시설로 인증할 수 있고 인증취소 사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증은 정부 등이 제품·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 등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증명하는 제도로 치유관광시설의 수준 향상에 기여할 취지로 보았습니다. 다만 인증취소에 대해서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봐서 수정안에 담아 두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전문지원기관 등에서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문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시도에서는 전문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갖춘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중앙의 전문기관과 지자체 간 보조거점 마련 및 지역관광 연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도 전문기관 및 지정센터 취소에 대해서 청문 절차가 빠져 있어서 수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31쪽 전문인력의 양성 조항입니다.

문체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서 관련 대학,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지원은 문체부장관이 단체에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마찬가지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수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문인력 양성과 재정 지원에 대해서 기재부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대상 비용 지원 규정 및 재정 지원 안 17조 4항 및 18조 규정은 현행 관광기금법에서 기금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정으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문체부 수용의견을 확인한 후 수정의견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해제 등인데 문체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하고 시·도지사는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지정해제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원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제도가 제도화될 경우는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트 사업이—참고자료 7에 있습니다—보다 확대·발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20조 제1항에서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권자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하였는데 아마 제주특별자치도, 별도의 제주관광진흥기금을 갖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이나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도 같이 제외되게 되므로.....

○**배현진 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스킵하고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2

시 본회의인데 지금 1시가 다 됐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짧게 좀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전완희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자치도를 포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수정안에 포함했습니다. 여기서도 기재부에서 22조의 삭제를 요청하여 수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문체부 동의하에.

마지막으로 42페이지의 별칙 규정 중에서 인증취소 시 과태료가 500만 원인데 유사 법령에서 100만 원이므로 이를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총괄적인 지원체계를 통한 육성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치유관광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광진흥법 등 기존 입법례와 전문위원, 관계부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임오경 예,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배현진 위원 제 입법이니까 제가 짧게 정리를 좀 해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임오경 예.

○배현진 위원 이 입법 취지는 제가 지난 21대, 우리나라에 국내 의료관광하러 오는 해외 여행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여행객 줄어서 한참 어려운 때 그 관광객의 형태가 대부분 관리 대상에서 다 벗어나 있고 민간의 브로커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실제 들어와서 그분들이 의료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들어온 김에 하는 국내 관광의 수요로 많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을 좀 정부가 관리체계하에 두어서 실질적인 수익사업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각 지방, 특히 어려운 지자체들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 입법을 제정법을 만들게 됐고요.

첫 번째는, 웰니스라는 용어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웰니스를 생애주기별 구별하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소년기, 중·장년기 이렇게.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관광의 목적으로 지금 하자고 하는데 문체부에서 보건복지부의 관할을 넘어서지 않고 쓸 수 있는 단어가 치유관광이었기 때문에, 의료라는 단어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제정법의 이름을 치유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넣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특별자치도에 관한 법안은 저희가 법안을 마련할 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말씀하신 대로 관광기금이 별도로 있어서 저희가 치유관광산업의 목적에 넣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후에 최근에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로이 행정구역이 개편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적사항을 수용해서 ‘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라는 그 문구를 삭제하고.

제정법이기 때문에 이 시작이 있어야지 그 이후에 개별법들도 나와서 더 발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민형배 위원 제정법을 오늘 심의를 마치자고요?

○**배현진 위원** 21대에도 수차례 했는데……

○**민형배 위원** 아니, 21대에는 저는 잘 모르는 얘기고……

○**배현진 위원** 질문을 해 주시면 정부와 나누면 되지요.

○**민형배 위원** 어디서부터 이것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할 텐데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배현진 위원** 이 법은 이미 저희 문체위에서 수차례 정말 오랜 기간 심의를 했고 공청회도 거쳤고……

○**민형배 위원** 제가 공청회 내용도 살펴봤는데 공청회에서도 정리가 딱 되지는 않았더만요, 보니까. 그리고……

○**배현진 위원** 어떤 부분이 정리가 안 됐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개념도 그렇고 정의도 그렇고 인증 절차에 관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시스터마틱(systematic)하게 돌아갈 거냐.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유사한 혹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개별법률들이 있잖아요? 이게 기본법의 성격이어야 할까 치유관광이라는 개별법의 성격이어야 할까 이것도 저는 사실 잘 판단이 안 돼요. 원래……

○**배현진 위원** 기본법의 성격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없기 때문에……

○**민형배 위원** 그러면 기본법의 성격이라면 이것을 좀 다른 법률과의 관계나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지금 몇 개 있잖아요? 산림치료 어쩌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법률체계하고 잘 조응하는지도 좀 봐야 되고.

저는 사실 이 법을 아직 제대로 보지를 못했거든요. 이 자료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지금 심사, 심의할 준비 자체가 안 돼 있어요.

○**배현진 위원**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 법안심사에 관해서는 아까 김재원 위원님도 어제 밤늦게까지 보셨다고 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은 제가 지금 법안을 준비한 의원으로서……

○**민형배 위원** 아니, 저는 한 번도 설명조차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21대에 문광위에 있지 않아……

○**배현진 위원** 자료를 제공받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 보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민형배 위원** 자료를 제공받고 다 읽어 보기는 했는데, 읽어 보고 정리를 해 왔는데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돼 있다고요, 이 법안을 심사, 심의하는 데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 있다고요. 처음이어 가지고, 방대하고 아래 가지고.

○**김승수 위원** 정부 측, 작년 9월 달에 공청회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김승수 위원** 작년 9월 달, 벌써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진전이 있었을 텐데, 이 법안 관련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저희는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저희가 작년에…… 아까 대체로 자료들 보시면 그 당시에 공청회에서 제기됐던, 공청회 참여하신 분들이 제기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자료에 정리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각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각 질문에 대해

서 어느 정도 그게 돼 있는지 다 정리를 지금 해 놨고요. 그리고 이번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서도 보셨다시피 저희가 그것을 다 수용하고, 그렇게 되면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수 위원** 쟁점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조율이 됐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네.

21대에서 저 또한 이 공청회도 참여했었고 이 법안에 관련돼서 저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사람 중의 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이것은 웰니스라 그래서 치료 목적인 관광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치료에 관련돼서 외국에서 왔을 때 병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절차적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심도 있게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관광특구 지정 시설도 저희가 앞서서 법안을 다룬 것에 관련돼서 혹시……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몰라서, 치유관광 이 산업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으로 한정돼서 들어갈 수는 없나요?

○**배현진 위원** 그런 디테일한 차월이 아니고요. 임오경 위원장님께서 21대에 지적하셨던 부분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치유관광이라는 게 관광 수요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혀 그 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문체부 안에도 이 틀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고요.

문체부와, 이게 지금 부처 간에 격벽이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와 이외에 말씀하신 여러 농어촌 관련한 다른 부처들과도 연계하고 협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 하나로 다 될 수가 없고 문체부에서 어쨌든 그릇은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제정하자라는 취지로 올린 법안입니다. 그래서 ‘의료’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겁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니까 저희가 웰니스에서 의료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의료 차원에서 한국으로 치료를 하기 위한 관광산업, 그 당시에는 그게 목적이 좀 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와서 의료관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누가 책임지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좀 전에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진료나 치료, 시술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의료행위 서비스 이 부분은 복지부 관련 소관이고, 그리고 혹시 그런 우려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검토한 것은 그런 의료관광과…… 그러니까 의료법과 관련된 내용은 이 법에서 제외한다든지 얼마든지 그런 대안을, 수정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께서 잠깐 깜빡 잊으신 것 같은데 지난 21대에 치유와 의료가 동치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수긍을 해 주셨던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관광객으로서의 수요를 발생시키는데, 그러니까 의료 수요를 발생시키는 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 수요를 발생시키는데 우리의 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취지인 거고요. 당연히 다른 부처와의

이후 협의 그다음에 후속 법안, 개별적인 시행령 규칙 등도 마련돼야 될 사항입니다.

○**박수현 위원** 우리가 예상하기로 다음번 법안소위 언제쯤 있을 예정입니까?

○**소위원장 임오경**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박수현 위원** 한 달에 한 번 있습니까?

○**소위원장 임오경** 예.

○**민형배 위원** 2주에 한 번 아니에요?

○**소위원장 임오경** 저희가 국회법에 의거해서 한 달에 한 번은……

○**박수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몇 달 뒤에 있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소위원장 임오경** 예.

○**박수현 위원** 한 달이나 2~3주 그 안에 있지요?

○**민형배 위원**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 시간을 좀 주시지요. 저는 정말 이것을…… 어제 저녁에 췌는데 자료를 안 보고 오면 어찌나 이러시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게 간단한 법이 아니고 법조문도 굉장히 많고 내용도 많아서 저는 진짜 제대로 보질 못했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것 오프 더 레코드로 저희 올케가 성형외과에서 일을 해서 이런 형태의 관광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들었지요. 그런데 저도 어젯밤에 한번 짹 훑어보긴 했지만 몇몇의 용어들이나 이런 것 조금만 정리를 더 하면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배현진 위원** 당연히 조문이나 이런 것들은 수정이 가능하고.

저는 민형배 위원님 말씀은 십분 이해하지만 사실 제가, 수석님 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더 어려워졌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어려워졌기 때문에 제가 굳이 부차적으로 한번 더 입법 취지와 그 내용을 간추려 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법안이기 때문에 그 결례를 무릅쓰고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이 입법을 저는 차제로 미룰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사를.

○**박수현 위원** 하여튼 저도 존경하는 배현진 의원님 발의하신 제정법이어서 굉장히 아주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지금 정부 측의 설명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사실은 정부 측도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부 입법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21대 국회는 21대 국회고 22대 국회에 와서 이것을 처음 보는 위원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저는 문체부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제정법인데 위원들에게 와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시켰어야지 여기 와서 처음…… 읽어 보고 왔다고 해도 그냥 서류로 보는 이 법을, 더구나 중요한 제정법인데 지금 와서 통과시켜 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선뜻 동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기를,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다음 법안심사소위에 목표를 두고 문체부가 22대 국회 처음 보는 위원들의 방에 와서 적극적으로 내용을 잘 설명해 주세요. 해 주셔서 다음 회의 때 배현진 위원님께서 ‘오늘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통과시킬 수 있게 그렇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문체부의 이런 태도는 사실 질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위원** 좋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어려우시지요, 법안? 그래서 그런 거지요?

○김재원 위원 법은 너무 좋아요.

○배현진 위원 취지 이해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 입법은 아닙니다. 진짜 순수하게 제가 현장에서 이게 필요하겠다라는 필요를 느껴서 입법을……

○민형배 위원 정부 입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제가 사실 이것을 2019년에 한번 검토한 적 있습니다, 정부 일 할 때.

○배현진 위원 아, 저는 아닙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게 필요한, 그때부터 계속 나왔던 필요한 법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배현진 위원 검토하셨으면 위원님 잘 아실 텐데 왜……

○민형배 위원 그런데 너무 달라져 가지고. 그때는 주로 의료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것도 사실은 그런데 관광이라고 붙여져 있고 치료라고 붙여져 있기 때문에 의료 쪽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한 건데……

○김재원 위원 원래 의료였다가 지금 관광으로……

○민형배 위원 그래서 사실은 치유관광이라고 하는 것부터 어디서 어디까지 이것을 치유관광이라고 해야 할까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른 사안들과 어떻게 연관돼 있을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실제로 나중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 관광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시게요, 볼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이게 사실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늦어진다고 해서 이게 난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배현진 위원 아니, 입법을 다시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셨던 내용이지만 지금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납득되지 않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도 동일한 생각이십니까?

○민형배 위원 그건 벌써 몇 년 전입니까. 5년 전 얘기인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김재원 위원 저는 이것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보완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저도 어젯밤에 한 번밖에 안 읽어 봐서 오히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주셨으면……

○배현진 위원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저도 수긍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다음에 최대한 빨리 논의하시지요.

○박수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걸 떠나서 실제로 아주 애정을 갖고 들여다봐도 나는 서류로 잘 느낌이 안 와, 실제로.

○배현진 위원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탁을 하나 드리고 오늘 정리하시지요, 1시 넘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솔직히 수석님도 헛갈리시니까 장황하게 더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진전된 내용들을 추려서 각 의원실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건대 이것은 다음 소위 때 다시 논의하는 걸로 저도 수긍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잘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박수현 위원님께서 이런 제안도 해 주셨어요. 제정법이고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처음 열리는 법안소위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너무나 방만하지 않았나, 제정법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위원님들에게 찾아뵙고 설명도 해 주시고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방만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관련돼서 21대에서 어떠한 절차·과정이 있었는지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재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위원장님, 아까 체육시설법에서 김승수 위원님 등이 위임하라고 해 가지고 한 사항을 문체부하고 조정해서 안을 ‘휴업기간, 통지 방법,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 등의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차관님,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과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승수 김재원 민형배 박수현 배현진 임오경 진종오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전문위원 전완희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장미란

체육국장 이정우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